

< 부 록 >

2018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

- 이 내용은 2018년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를 정리한 것임.
-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용과 시행시기가 변경될 수 있음.

2018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

달라지는 제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
			관계 부서
1. 신고수리 및 인·허가 간주제 실시	< 신 설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허가, 신고 등 정해진 기간 내 처리결과 또는 지연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 	산림자원법 ('17.12.1) 국유림법 ('18.5.1) 산지관리법 ('18. 6월)
			목재산업과 (042-481-8875) 국유림경영과 (042-481-4094) 산지정책과 (042-481-4141)
2. 불법목재 교역 제한제도 시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목재류 수입 시 세관장에게 관세납부 신고 후 통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목재류 수입 시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 의무화 - (대상품목) 원목, 제재목, 방부목재, 난연 목재, 집성재, 합판, 목재펠릿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목재합법성 서류검사를 받은 후 수입신고확인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통관 	목재이용법 ('18. 10.1 예정)
			임업통상팀 (042-481-4085)
3. 임산물 수출 지원창구 일원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임산물 수출 OK지원팀 운영(산림청 총괄, aT 주관) 산림청 및 유관기관별로 수출지원사업을 별도 안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한 수출 OK지원팀 운영 및 수출지원 통합 플랫폼 구축·운영 등 임산물 수출 지원창구 일원화 	'18년 수출촉진 대책 ('18. 1월)
			임업통상팀 (042-481-4086)
4.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 수립주기 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산림기본계획, 지역산림계획 수립 주기 : 10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 수립주기를 20년으로 조정 	산림기본법 ('18.1.1)
			산림정책과 (042-481-4135)
5. 임업진흥계획 간소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산림기본계획과는 별도로 10년간의 임업진흥계획을 수립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임업진흥계획 또는 지역별 진흥계획의 주요 내용이 산림기본계획 또는 지역산림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임업진흥계획 또는 지역별 진흥계획이 각각 수립된 것으로 간주 	임업진흥법 ('18 상반기)
			산림자원과 (042-481-4184)
6. 국유양묘장 묘목 생산 단가인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묘목생산 단가 : 470원/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묘목생산 단가 : 544원/본 	'18년 사업계획 ('18. 1월)
			산림자원과 (042-481-4157)

달라지는 제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
			관계 부서
7.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 단가 상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,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: 52천원/일 숲가꾸기 패트를 : 60천원/일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,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: 60,240원 숲가꾸기 패트를 : 68,240원 	'18년 사업계획 ('18. 1월)
			산림자원과 (042-481-4157)
8. 공공기관 목재 우선구매 제도 시행	< 신 설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에서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국산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우선 구매 - 목재이용법 하위법령 마련 추진 	목재이용법 ('18. 5월)
			목재산업과 (042-481-4204)
9. 국외 목재제품 규격·품질 검사기관 지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내 검사기관에서만 규격과 품질검사를 실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외에서도 목재제품 규격·품질검사가 가능한 기관을 고시 	국외목재제품 규격 품질검사 기관 고시('18.5.24)
			목재산업과 (042-481-1803)
10.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	< 신 설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산림기술자 양성·관리, 교육훈련 의무화, 산림기술용역업 등록·관리, 안전관리 계획 수립·안전교육 의무화 등 추진 	산림기술진흥법 ('18.하반기)
			목재산업과 (042-481-4187)
11.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	< 신 설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산림작업 안전모, 작업복(상·하의, 덧바지), 안전장갑, 안전화 등 6품목에 대한 품질인증 	임업진흥법 ('18.연중)
			목재산업과 (042-481-4187)
12. 산림사업법인 등 등록기술자 취업정보 확인	< 신 설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산림사업법인 등 등록기술자 확인·조사를 위한 4대 보험 가입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구 시 제공 의무화 	산림자원법 ('18. 5월)
			목재산업과 (042-481-4187)
13. 임도기술자문단 운영	< 신 설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임도 중앙기술자문단(산림청) 및 지역임도 기술자문단(기관별) 운영 	'18년 목재산업 시책 ('18. 연중)
			목재산업과 (042-481-4276)
14. 목재자원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	< 신 설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목재자원관리시스템 사용이 법으로 의무화 - 대상 : 공무원 및 목재산업계 * 산림자원법(공무원), 목재법(목재산업계) 	산림자원법 목재이용법 ('18.1.1)
			산림청 목재산업과 (042-481-8875)
15. 임업인 융자지원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귀산촌인 융자 - 융자총규모 : 240억원 - 융자한도 : 정착지원 50백만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귀산촌인 융자 - 융자총규모 : 340억원 - 융자한도 : 정착지원 75백만원 (목조주택 100백만원) 	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('18. 1월)
			사유림경영소득과 (042-481-4191)
	< 신 설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임업인 단기운전자금(임업인경영자금 지원) 융자 : 2.5% 또는 변동, 1천만원 한도 	

달라지는 제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
			관계 부서
16. 산림조합 특화사업 공모시기 조정	• 공모시기 10월	• 공모시기 5월	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(’18.1월) 산유림경영소득과 (042-481-4156)
17. 국유림 소액대부료 일괄 징수제 도입	• 소액대부료 매년 부과· 징수	• 매년 징수하는 국유림의 연간 대부료 등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일시에 통합 징수 가능 - 대부기간 중의 대부료 등이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않음	국유림법 (’18.5.1) 국유림경영과 (042-481-4098)
18. 국유림 대부 등에 대한 권리양도·명의 변경 제한	• 권리양도·명의변경 가능	• 원칙적으로 금지하되,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가	국유림법 (’18.하반기) 국유림경영과 (042-481-4098)
19. 임산물 운반로 사용허가 허용	• 국유림 안에 위치한 공·사유림에서 생산되는 목재의 반출 등 임산물의 운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허가 가능	• 공·사유림에서 생산되는 목재의 반출 등 임산물의 운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전국유림 사용허가 허용	국유림법 (’18.하반기) 국유림경영과 (042-481-4098)
20.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숙박료 감면	< 신 설 >	• 장애인, 지역주민, 다자녀가정,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국유 산림복지시설 객실 이용 요금의 30~50%를 감면(비수기 주중) * 해당 국유산림복지시설 : 국립 산림치유원, 국립 황성·장성·칠곡 숲채원	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징수기준 (’17. 11월 15일) 산림복지정책과 (042-481-1841)
21. 수목장림의 사용허가 가능	< 신 설 >	• 수목장 조성주체를 「장사법」 시행령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로 확대 - 산조중앙회, 임업진흥원, 산림복지진흥원, 농어촌공사,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• 공동산림사업자 범위를 수목장림 조성 주체와 동일하게 확대	국유림법 (’18.하반기) 국유림경영과 (042-481-4098)
22. 보전국유림 내 수상태양광 설치 허용	• 태양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은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	•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중 전기시설 사용허가 가능	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(’18.상반기) 국유림경영과 (042-481-4098)
23. 공·사유림 매매 및 교환 시 서명 확인서 사용 가능	• 공사유림 매매계약서 및 교환계약서 작성 시 인감증명서만 사용 가능	• 공사유림 매매계약서 및 교환계약서 작성 시 인감증명서와 서명확인서 중 선택하여 사용가능	국유림법 (’18.상반기) 국유림경영과 (042-481-4096)

달라지는 제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
			관계 부서
24. 산림휴양·숲길 기본계획(지역계획) 수립주기 변경	•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주기 10년	• 수립주기를 5년으로 변경(법 시행 이후 수립 또는 변경수립 계획부터 적용) - 기본계획(지역계획)을 휴양, 문화, 치유, 레포츠 등 부문별 계획으로 수립 가능	산림휴양법 ('18. 1월)
			산림휴양등산과 (042-481-4211)
25. 등산·트레킹학교 사용료 징수	< 신 설 >	• 산림청장 또는 시·도지사가 개설·운영하는 등산·트레킹학교의 사용료 징수	산림휴양법 ('18. 7월)
			산림휴양등산과 (042-481-4106)
26. 산림레포츠시설내 건축물의 설치 기준	< 신 설 >	• 산림레포츠시설에 설치하는 건축물 등 시설의 기준 마련 -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5천㎡ 이하까지 허용 -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은 900㎡ 이하까지 허용 -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, 휴게음식점 연면적은 200㎡ 이하로 한정 • 산림레포츠시설에 이용자 편의를 위한 매장, 휴게음식점, 임산물판매장 설치허용	산림휴양법 ('17.12월)
			산림휴양등산과 (042-481-4106)
27.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 확대	• 국반·외교사절단 및 수행원, 만6세 이하 또는 만65세 이상, 장애인(1~3등급은 보호자 포함), 독립유공자 및 유족, 5·18민주유공자, 참전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등	• 의상자·의사자유족, 고엽제환자 등을 추가	산림휴양법 ('17.12월)
			산림휴양등산과 (042-481-4211)
28. 자연휴양림 위탁 법인·단체의 자격기준	• 자연휴양림 등의 조성·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법인·단체의 기준 - 산림조합, 산림복지진흥원, 비영리법인, 지방공사, 독립가 또는 산림공무원 단체 등	• 산림공무원 단체는 위탁 대상에서 제외 - 독립가·임업후계자 또는 산림기술자는 5명 이상 단체로 명확히 규정	산림휴양법 ('17.12월)
			산림휴양등산과 (042-481-4211)
29. 유아숲교육 및 산림치유 전문업 위탁운영제도 도입	• 유아숲지도사 및 산림치유 지도사를 국가, 지자체에서 직접 선발·운영	• 유아숲교육 및 산림치유서비스를 산림복지 전문업(유아숲교육업, 산림치유업, 종합산림복지업)에 등록된 자에게 위탁운영	'18년도 산림교육치유 운영 사업 지침 ('17. 12월)
			산림교육치유과 (042-481-1813)
30. 산지전용허가시 산지관리위원회의 중복심의 생략	• 산지에서 구역 등의 지정, 50ha 이상의 산지전용허가 시 산지관리위원회 심의 필요	• 산지에서 구역 등의 지정 시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산지는 산지관리위원회의 산지전용허가 심의를 생략	산지관리법 ('18.상반기)
			산지정책과 (042-481-4141)

달라지는 제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
			관계 부서
31.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 해제 사유 추가	•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음	•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해제 가능	산지관리법 ('18.상반기)
			산지정책과 (042-481-4141)
32. 산림보호구역 내 사설수목장림 설치면적 확대	• 3만㎡ 미만	• 10만㎡ 미만	산림보호법 ('18. 1월)
			산림환경보호과 (042-481-4246)
33.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가 가능한 시설 범위 명확화	< 신 설 >	• 시설범위를 관련규정에 따른 학교·농로·산업·군사시설로 명확화	산림보호법 ('18.6.28)
			산림환경보호과 (042-481-4246)
34. 산림재해일자리 인력선발기준 변경	• 취약계층에 만 55세 이상 포함 • 우선선발(장년층참여 70%) • 반복참여 가능 55세이상	• 취약계층에 만 55세 이상 제외 • 우선선발(취약계층 30%, 장년층 70%, 청년층 20%) 비율 적용 • 반복참여 가능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상향 •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 선발제한(신설) * 2회 이상 공고에도 채용목표 인원 미달 시 3회차는 부더는 반복참여 예외 적용	'18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종합지침 ('18. 1월)
			산불방지과 (042-481-4251)
35. 산림재해일자리 임금단가 상향	• 55,000원/일	• 63,240원/일	'18년 산불방지분야 사업계획 ('18. 1월)
			산불방지과 (042-481-4251)
36.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상시운영	• 200명(시범운영)	• 300명 상시운영(지방청 및 국유림관리소) * 야간·도심·대형산불에 대응한 지상진화 전문성 제고와 산불 연중화에 대응	'18년 산불방지분야 사업계획 ('18. 1월)
			산불방지과 (042-481-4251)
37. 산불 진화장비 점검 의무화	< 신 설 >	• 산불 진화장비의 정기점검을 의무화하여 상시 재난대응체계 유지	산림보호법 ('18. 7월)
			산불방지과 (042-481-4251)
38. 산불진화 협조요청기관 확대	• 협조요청 대상에 소방관서, 경찰관서, 군부대만 명시	• 산불진화 협조요청 대상에 문화재청 및 그 부속기관,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소속 공원사무소, 기상관서를 추가	산림보호법 ('18. 7월)
			산불방지과 (042-481-4251)

달라지는 제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
			관계 부서
39. 산사태 위기경보 발령기관 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위기경보 발령 기관 - 중앙대책본부장, 시도지사, 시장·군수구청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위기경보를 발령 (산사태 : 산사태방지고) 	산림보호법 (’18.상반기) 산사태방지고 (042-481-8846)
40. 사방시설 안전관리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방시설 점검방법 1단계 및 등급판정 3단계 • 사방시설 점검기관 : 1개 기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방시설 점검방법 2단계(외관·정밀)로 정밀·세분화하고 등급판정 5단계로 세분화하여 안전관리 강화 • 사방시설 점검기관을 외관점검 5개 기관, 정밀점검 2개 기관으로 확대 강화 • 기타 점검 조사서 등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 세분화하여 안전관리 강화 	사방시설 유지관리 지침(’18년 2월) 산사태방지고 (042-481-4272)
41. 나무의사 자격시험 제도 시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산림사업 법인이 수목치료 (수목보호기술자 등, 민간자격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나무병원 설립 후 수목치료(나무의사, 국가자격) 	산림보호법 (’18. 6. 28) 산림병해충방제과 (042-481-4038)
42.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 방제 나무주사 시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재선충 살충제 사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재선충 및 매개충 살충제 사용 	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(’18. 3월) 산림병해충방제과 (042-481-1833)
43. 백두대간 주민 지원사업 추진 체계 개선	< 신 설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임산물 저장·건조·가공시설에 필요한 운반장비·기자재 지원 • 보조사업 신청을 위한 백두대간보호지역 거주기간(3년) 설정 	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지침 (’18. 1월) 백두대간보전팀 (042-481-8815)
44. 산림 사이버안전 센터 운영	< 신 설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본청 및 소속·산하기관에 대한 자체 보안관제실 24시간 운영 	산림청 정보보안기본지침 (’18. 2월) 정보통계담당관실 (042-481-4125)
45. 산림통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가승인통계 - 국가산림자원조사 등 9종 • 임산물생산조사 - 147개 품목 중 산양삼 도급조사 추진 • 임산물생산비조사 - 밤, 대추, 호두, 더덕, 뽕은감, 표고버섯 (6개) • 산림기본통계 - 시도 단위 산출(1년) - 공표(5년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가승인통계 - 전국산주현황, 임산물소득조사 신규 승인 (9종 → 11종) • 임산물생산조사 - 특별관리 임산물인 산양삼 행정조사 추진 (한국임업진흥원) • 임산물생산비조사 - 산나물(공취) 신규조사로 품목 확대 (6개 → 7개) • 산림기본통계 - 시군구 단위 산출(1년) - 공표(5년) 주기는 유지 	통계법 제18조 (’18.1.1.) 정보통계담당관실 (042-481-4166)